

#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6. 24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6. 25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99. 7. 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가.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자제 및 1회용품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위 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의 신설 또는 강화로 1회용품 사용규제 조기정착에 기여.

나.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 금액 인상

• 1차 위반 :

[	1,000,000원 ~ 1,500,000원 → 2,000,000원 ~ 3,000,000원
	2,000,000원 ~ 2,500,000원 → 3,000,000원

• 2차 위반 : 1,5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3차 위반 : 3,000,000원(변동없음)

##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4호
의결년월일	99. 7. 8 (제71회)

제출년월일 : 1999. 6. 2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자제 및 1회용품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의 신설 또는 강화로 1회용품 사용규제 조기정착에 기여.

□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 금액 인상

- 1차 위반 :
  - 1,000,000원 ~ 1,500,000원 → 2,00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 ~ 2,500,000원 → 3,000,000원
- 2차 위반 : 1,5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3차 위반 : 3,000,000원(변동없음)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중 적용법·부과항목 및 부과금액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후)
자원 의 절 약 과 재 활 용 촉 진 에 관 한 법 률	1.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3조제2항)				1. (현행과 같음)				
	가.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가. (현행과 같음)	2,000	2,500	3,000	
	나. 제1종 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나. (현행과 같음)	2,000	2,500	3,000	
	다. 제2종 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000	3,000	다. (현행과 같음)	1,500	2,000	3,000	
	라.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000	3,000	라. (현행과 같음)	1,500	2,000	3,000	
	(신설)				2.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	3,000	3,000	3,000	
					질등에관한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2. 제품의포장방법및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3. (현행과 같음)			
		가. 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현행과 같음)			
	(1)기준보다 25% 미만 초과한 때	1,500	2,000	3,000	(1)(현행과 같음)	2,000	3,000	3,000	
	(2)기준보다 25% 이상 50% 미만 초과한 때	2,000	2,500	3,000	(삭제)				

현행				개정안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 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 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자 원 의 절 약 과 재 활 용 촉 진 에 관 한 법 률	(3)기준보다 50% 이상 초과한 때 나. 포장횟수 위반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500	3,000	3,000	자 원 의 절 약 과 재 활 용 촉 진 에 관 한 법 률	(2)기준보다 25% 이상 초과한 때 나. (현행과 같음)	3,000	3,000	3,000	
	(1)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 때	1,000	1,500	3,000		(1)(현행과 같음)	2,000	3,000	3,000	
	(2)기준보다 2회를 더 포장한 때	1,500	2,000	3,000		(삭제)				
	(3)기준보다 3회 이상 더 포 장한 때	2,000	2,500	3,000		(2)기준보다 2회 이상 더 포 장한 때	3,000	3,000	3,000	
	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 하여 첩합(라미네이션) 또 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 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다. (현행과 같음)	3,000	3,000	3,000	
	라.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라. (현행과 같음)	3,000	3,000	3,000	
	마. 식품류·잡화류·종합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연차별 감량 화 지침 준수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마.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 별 감량화를 미이행에..... ..... ..... .....	3,000	3,000	3,000	

현행				개정안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 범 위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 범 위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자 원 의 절 약 과 재 활 용 촉 진 에 관 한 법 률	바.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 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 충재의 감량화 지침에 따른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대 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때 사. 가전제품의 품목별로 연간 2만대 이상 제조 또는 수입 하는 자가 완충재 감량화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 획재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신설)	2,000	2,500	3,000	자 원 의 절 약 과 재 활 용 촉 진 에 관 한 법 률	바.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 충재 감량화를 위한 ..... ..... 사.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 충재 감량화기준 위반에 대 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때 아. 가전제품 제조자 등이 합성 수지재질의 완충재를 감량 화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 도 계획의 미재출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자. (현행과 같음)	3,000	3,000	3,000
	아. 제조자 등이 가전제품 판매 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의 그 포장재 회수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아. 가전제품 제조자 등이 합성 수지재질의 완충재를 감량 화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 도 계획의 미재출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자. (현행과 같음)	3,000	3,000	3,000



현행				개정안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 범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 범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자 원 의 절 약 과 재 활 용 촉 진 에 관 한 법 률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 사용 자재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친한(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삭제)				
	나.의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500	1,000	(삭제)				
	다.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	2,000	3,000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1)일반목욕업(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1,000	2,000	3,000	(삭제)				

현행					개정안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특수목욕업(사우나탕, 터키탕, 복합목욕탕)	1,500	2,500	3,000	(삭제)				
	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중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삭제)				
	(1)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1,500	2,500	3,000	(삭제)				
	(2)여관업 및 여인숙업	1,000	2,000	3,000	(삭제)				
	마.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다.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및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신설)				(1)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및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현행				개정안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후)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신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3,000	3,000
	(신설)					(3)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3,000	3,000
	(신설)					(4)재활용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영 제1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바.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삭제)			
	사.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삭제)				

현행				개정안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후)
자원원의 절약과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아.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식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자원원의 절약과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라.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자.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 음악 및 예술관련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2,000	3,00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3,000	3,000

현행					개정안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 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 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자 원 의 절 약 과 재 활 용 촉 진 에 관 한 법 률	4. 일반폐기물과 재활용기준 준수 등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2항)				자 원 의 절 약 과 재 활 용 촉 진 에 관 한 법 률	5. (현행과 같음)			
	가.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300	500	1,000		가. (현행과 같음)			
	나.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800	900	1,000		나. (현행과 같음)	800	900	1,000
	5.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34조제3항)					6. (현행과 같음)			
	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지정사업자	300	500	1,000		가. (현행과 같음)	300	500	1,000
	나.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정사업자	300	500	1,000		나. (현행과 같음)	300	500	1,000
	다.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지정사업자	300	500	1,000		다. (현행과 같음)	300	500	1,000
	라.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배출 사업자	300	500	1,000		라. (현행과 같음)	300	500	1,000
	마.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300	500	1,000		마. (현행과 같음)	300	500	1,000
	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300	500	1,000		바. (현행과 같음)	300	500	1,000

“별지”

[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

적용범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1.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3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나. 제1종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다. 제2종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000	3,000
	라.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000	3,0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3,000	3,000	3,000
	3.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기준보다 25% 미만 초과한 때	2,000	3,000	3,000
	(2) 기준보다 25% 이상 초과한 때	3,000	3,000	3,000
	나. 포장횟수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 때	2,000	3,000	3,000
	(2) 기준보다 2회 이상 더 포장한 때	3,000	3,000	3,000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라.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 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마.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율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바.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사.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 기준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야. 가전제품 제조자 등이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를 감량화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의 미제출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자. 제조자 등이 가전제품 판매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의 그 포장재 회수의 무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4.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15조제5항)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2)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3,000	3,000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다.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	3,000	3,000	3,000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하지 아니한 때			
	(2)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3,000	3,000
	(3)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3,000	3,000
	(4)재활용품의 교환·판매 매장의 설치·운영 (영 제1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3,000	3,000